-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서술하라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 사본의 출력 문건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 1.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음
 - 2. 원본과 사본(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간 동일성이 인정됨
 - 3. 이용한 컴퓨터/분석도구의 정확성과 신뢰성, 분석가가 객관적으로 전문적임을 증명해야 한다.
- 또한, 증거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함에 대해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 부받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는

- 1.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해시 값이 변경되지 않았음
- 2. 법원의 증거 원본과 사본의 대조

에 의해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다.

-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사본 생성 등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통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분석 등 전 과정의 영상촬영
 - 2. 쓰기방지장치 또는 논리적 쓰기방지, 자동실행설정 해제 등을 통한 무결성 유지
 - 3. 생성된 사본에 대한 해시값을 입회인, 피압수자 등에게 확인 후 서명 날인
 - 4. 정전기방지봉투, 충격보호케이스 등에 증거물 밀봉 후 입회인 등에 확인 후 서명 날인
 - 5. 증거물 분석을 위해 이송 등의 과정에서 연계보관성 유지를 위한 모든 과정 문서화 및 인수인 계자, 참관인 등의 서명날인
-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증거 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원본과 증거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를 기술하시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지털증거 사본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원본과 법원에 제출되는 사본(출력되는 문건 등)간 압수시부터 법원에 제출되기까지의 동일성
 - 2. 법원에 제출되는 사본이 압수시부터 법원에 제출되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
 - 3. 증거 분석에 사용되는 컴퓨터/분석 도구의 정확성, 전문가의 객관적인 전문성을 통한 신뢰성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 사본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디지털 증거 원본과 사본 간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피압수수색자의 확 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 1. 위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압수, 봉인, 봉인해제, 사본생성 등에 참여한 수사관 또는 전문가의 증언에 의해 해시값이 변경되지 않았음
- 2. 법원의 디지털 증거 원본과 사본 간 대조를 통해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다.

- 무결성과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 1. 증거물 압수수색 및 분석 등의 전 과정 영상 촬영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물 압수 및 분석 등이 이루어졌음을 증명
- 2. 무결성 유지를 위해 쓰기방지장치 또는 논리적 쓰기방지, 자동실행설정해제를 수행
- 3. 디지털 증거물 사본 생성 시 해시값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피압수수색자 또는 입회인 등의 서명날인을 받음
- 4. 증거물 압수 시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증거물을 충격보호케이스, 정전기 방지 봉투 등 봉인 후 입회인 등의 서명 날인을 받음
- 5. 증거물 분석을 위해 이동하는 등의 경우 연계보관성 유지를 위해 전 과정을 문서화하고, 관련 인, 입회인 등의 서명날인을 받음.
- 디지털 증거물의 동일성과 분석관의 자격요건 및 분석도구의 진정성 증명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 피압수자 참여없이 탐색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검사, 변호사, 피고인은 참여권을 가지며, 피압수자 등 참여권한을 가진 이의 참여없이 탐색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서면으로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한을 가진 이들에 통지해야하며, 집행이 끝난 후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에서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 1. 공무소 또는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내에서 압수수색 집행 시 해당 책임자
 - 2, 타인의 주거, 간수인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내에서 압수수색 집행 시 주 거주자,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3. 2항의 사람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허나 예외적으로, 피압수자 등 참여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사전에 집행의 장소와 일시를 고지했음에도 참여를 거부하였을 때, 이를 문서로 제출받아 증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 참여없이 집행이 가능하다 (상당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태). 또한, 증거물의 분석을 위해 이동, 다른 일자에 분석할 때에도 사 전에 집행의 장소, 시간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집행이 끝난 후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피압수자 스스로 참여권을 거부한 상태이고, 현장이 아닌 수사기관 분석실에서 분석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절차상 위법이라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석관이 이를 대응하기 위한 사전준비와 대처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검사, 피고 및 변호인이 참여권한을 가지며, 참여권한을 가지는 이들에 대해 사전에 집행 일시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집행이 끝난 후 압수목록을 교부하여 야 한다. 그러므로,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해당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또한,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위해 분석실로 이동 등하여 압수한 증거물을 복제, 탐색, 출력 등 하는 경우에도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압수자 등에 고지하여야 하며,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집행 일시와 장소를 고지하였고, 이에 스스로 피압수자가 참여권을 거부하였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피압수자 스스로 참여권을 거부하였음을 문서로 제출받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당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집행이 끝난 이후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1. 공무소 또는 군사용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내에서 압수수색 집행 시 해당 책임자
 - 2.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내에서 압수수색 집행 시 주 거인,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3. 2항의 사람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

- 증거사본 US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취해야 할 법적조치는?
-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의 포렌식 작업에 대해서 모든 참관을 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 포렌식 작업이 완료된 후 압수수색 종료를 하려는 과정일 때, 조사관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 피압수자 참여없이 증거 분석 및 제출시 법정에서 피의자가 절차위반을 이유로 증거능력 부정시 분석 관으로서 사전조치 및 대응방안?

- 용의자 A의 USB를 분석하다 용의자가 특정 웹사이트 DDOS 공격을 의뢰한 이메일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때 A의 이메일을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조치를 기술하라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별건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였을 시 해당 압수수색영장 (제1영장)에 대한 증거물 탐색은 가능하나, 별건정보에 대한 증거물 탐색은 즉시 중지해야하며, 해당 별건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해당 별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제2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참여권을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무결성 및 연계보관성 등을 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별건정보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 1. 최초 발급받은 영장(제1영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적법하게 탐색하던 과정 중
 - 2. 별도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
 - 3. 별건정보에 대한 추가 영장(제2영장)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부
 -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 교부
- 별건증거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 대법원 판례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제1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증거물을 탐색하던 중 별도의 범죄사실에 대한 전자정보가 우연히 발견되어야 하며, 이 때 제1영장에 대한 증거물 탐색은 계속할 수 있으나, 별건에 대한 증거물 탐색은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별건정보에 대한 추가영장(제2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탐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탐색되어야 한다.
- 기밀유출 관련사건 조사 중에 음란물 동영상을 발견되었다. 이때 분석관이 취해야 할 행동은?
- 별건정보 발견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서술하라.

- 전문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법칙에 대해 서술하라.
- 전문증거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아닌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로,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 1. 법관이 작성한 조서
 - 2.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
 - 3.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제 3자의 진술서
 -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
 - 4. 진술자가 사망 또는 해외거주 등에 의해 진술불능인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 된 조서 및 서류
 - 5.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
 - 가.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나. 공정증서등본 등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
 - 다. 통상문서 :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작성된 문서
 - 라. 기타 특히 신용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
 - 6.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고,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일 경우 전문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또한, 디지털 증거에서 로그파일 등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한 문서의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한글파일, 메모장 파일 등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하지 아니한 문서 등의 경우 전문증거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아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는 부정된다.
- 범죄를 공모한 정황이 기록된 한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 서술하시오.
 - 전문증거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아닌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로, 전문 법칙의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한글 파일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로그파일 등)하지 아니한 문서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 전문법칙 의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법관이 작성한 조서
 - 2.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조서
 - 3.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된 제 3자의 진술서
 -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때
 - 4. 진술자가 해외거주, 사망 등으로 진술불능일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 및 서류
 - 5. 통상문서 :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작성된 문서
 - 6. 진술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할 경우,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

- 검사는 갑이 을에게 보낸 이메일을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였다. 위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 한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 서술하시오.
- 북한 찬양 문서 파일은 전문증거인가?
- 통상문서란 무엇이고 통상문서에 해당하는가?

- A가 B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위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B 소유의 USB를 입수하기 위해서 흥신소에 의뢰하여 해당 USB를 절취한 후 검사측에 전달하였다. 이 USB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 형사소송법 상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부터 수집된 2차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의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적법 절차 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형사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평가되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부터 수집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예외의 이론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갑이 을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을의 핸드폰을 절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능력 인정?
- 형사소송법 상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해당 증거를 통해 수집된 2차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의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가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적법한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수 있다. 또한,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부터의 2차 증거를 모두 부정할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예외의 이론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갑이 을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을의 노트북을 절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능력 인정?

- 분석과정에서 피고인의 외국계 이메일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이메일 계정의 범죄관련 이메일 송·수신 내용을 압수함에 있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를 서술하라.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인정을 위해
 - 1. 이메일의 주소와 패스워드 등 로그인 정보를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적법하게 취득
 - 2. 피고인 또는 피압수수색자 등의 참여권 보장
 - 3.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집행의 장소(예.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무실 pc)에서 원격지 저장매체(외국계 이메일 서버 저장소)에 접속
 - 4. 피고인 또는 피압수수색자가 통상적으로 접근(로그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격지 저장매체(서 버)에 접근(로그인)하여 접속
 - 5.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수집 하여야 한다.
- 분석과정에서 피고인의 외국계 클라우드 DB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클라우드 DB 계정의 범죄관련 내용을 압수함에 있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를 서술하라.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원격지 압수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 1. 피고인 또는 피압수자의 계정명 또는 패스워드를 해당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내용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
 - 2. 피고인 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
 - 3.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집행의 장소(예.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무실 PC)에서 원격지(외국계 저장 매체 ; 외국계 클라우드 DB)에 접속
 - 4. 피고인 또는 피압수자가 외국계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로그인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속
 - 5. 해당 압수수색영장 내용에 따른 범죄사실만을 선별하여 수집 하여야 한다.

- 범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조치를 서술하시오
- 특정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자료제출요청 서)으로 제출을 요청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그 즉시 서면(자료제출요청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단,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요 청받을 수 있다.
- 범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무엇이며, 법적 근거에 의해 해당 자료를 발부받는 절차를 서술하시오.
- 통신자료는 특정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다.
- 통신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사유 등을 포함한 서면(자료제공요청서) 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자료제공요청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자료제공요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범인의 통신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는 무엇이며, 법적 근거에 의해 해당 자료를 발부받는 절차를 서술하 시오.
- 통신사실확인서는 통신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통신개시 및 종료 시간, 수/발신자의 가입자 번호 등의 통신내역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다.
- 통신사실확인서를 발부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긴급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다.

- 원칙적으로 통신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이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또는 입건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한 경우 반드시 그 처분을 받은 이에게 발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후통지를 해야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증거인멸, 도주 등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사건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에 한하여 통지를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 납치 용의자의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절차?
-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조치가 필요
- 통신제한조치는 별도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허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는 해당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허가청구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안일 경우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며, 해당 통신제 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해야 함.

- 통신제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목적 달성 시 즉시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신제한조치 연장을 법원에 허가청구 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하거나, 공소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이에게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감청의 경우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과 집행기관, 그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후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